|  |
| --- |
| 프랑스 「민법」 중  상속 관련 주요 규정 |

|  |  |  |  |
| --- | --- | --- | --- |
|  | **<목 차>** | |  |
|  |  |
| **Ⅰ. 서론** | |  | |
| **Ⅱ. 상속 신고 및 상속세 감면 대상** | |  | |
| **Ⅲ. 프랑스 상속법상 상속순위** | |  | |
| **Ⅳ. 상속 관련 주요 규정** | |  | |
|  | |  | |

|  |
| --- |
| I. 서론 |

상속이란 사전상 의미로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1]](#footnote-1) 즉,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 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2]](#footnote-2)

상속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일회적, 일시적 특징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동떨어진 일로 여길 수 있으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인이 일생을 거치면서 언제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상속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등기법」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분량은 친족법 등보다 적지만 중요도는 높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배우자의 상속법상 권리 향상을 중심으로 상속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여론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비슷한 예로 프랑스에서도 약 17년 전 사회·경제적 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법상 권리를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12월 3일 법률 제2001-1135호[[3]](#footnote-3)를 통해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고 주거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4]](#footnote-4)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을 포함한 프랑스 현행 「민법」상의 상속 관련 규정을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홈페이지[[5]](#footnote-5)의 상속 관련 규정과 질의를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상속 관련 규정은 「민법」 제3편제1장(제720조부터 제89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순위와 관련된 사항은 제3편제1장제3절(제731조부터 제767조) ‘상속인’에서 규정한다.

|  |
| --- |
| II. 상속 신고 및 상속세 감면 대상 |

상속을 받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는 조세당국으로 전달되며 조세당국은 수증자가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droits de succession) 납부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즉 수증자(donataire) 또는 수유자(légataire)는 상속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중 1인이 대표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그러나 각각 다음의 경우에 상속인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  |  |  |
| --- | --- | --- |
| **고인의 자녀** | **고인의 배우자 또는 시민연대협약을 체결한 동거인** | **그 밖의 상속인** |
| 고인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등기나 신고 없이 건네거나(don manuel) 증여한 경우 | 고인이 등기나 신고 없이 건네거나 증여한 경우 | 총상속재산가액이 3,000유로 이상인 경우 |
| 총상속재산가액(actif brut successoral)이 50,000유로 이상인 경우 | 총상속재산가액이 50,000유로 이상인 경우 |

고인이 프랑스에서 거주한 경우, 상속인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재산(동산 및 부동산)을 프랑스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 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고인이 용익권자였던 재산과 생명보험계약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 그러나 국제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인이 외국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 받는다. 상속인이 고인 사망 시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최근 10년 동안 6년 이상을 프랑스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프랑스 또는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고인 사망 시점에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 중 프랑스에 위치한 재산만이 과세대상이다.

1.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공증인에게 각 상속인에게 적합한 서식[[6]](#footnote-6)에 따라 상속신고서(déclaration de succession)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상속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각 서식은 두 부(원본과 사본)로 작성한 후 서명해야 한다.

1. **신고 내용**

상속신고서 제11277\*07호 Cerfa[[7]](#footnote-7)서식의 경우, 다음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인, 상속인 및 수유자의 신원과 혈족관계 표시
* 필요한 경우 유언의 내용
* 고인이 혼인한 경우, 부부재산계약 조항(또는 계약이 없었음을 표기)
* 고인이 시민연대협약을 체결한 경우, 시민연대협약의 증거
*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고인이 과거에 실행한 증여 표기
* 모든 상속 재산의 목록 및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상세한 평가
* 필요한 경우 고인이 가진 부채의 목록 및 총액
* 사망 당시 유효한 도난이나 화재 보험계약의 대상인 보석, 귀금속, 예술작품 또는 컬렉션
* 진위의 확인

1. **신고 기한**

프랑스 본토에서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도(outre-mer)나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고 제출하는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1. **신고 장소**

상속신고서는 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공공재정센터(centre des finances publiques)에 제출한다.

1. **상속세 감면 대상**

생존한 배우자나 시민연대협약을 체결한 동거인에게 상속되는 유산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또한 고인 사망 당시 △ 고인 사망 전 5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고 △ 독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또는 별거중인 사람 중 하나에 속하며 △ 50세 이상이거나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세를 면제 받는다.

다음에 나열된 공법(droit public)에 따른 법인이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는 면제된다.

* 레지옹(région),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 및 이러한 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 환경보호나 동물보호를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공익단체나 재단
*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학, 문화 또는 예술 분야에 재원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
* 국가 및 과학, 교육, 원조 및 복지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국립공원 관련 공공기관

전쟁피해자나 테러피해자, 해외 작전 중 사망한 군인,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관, 경찰, 군인경찰(gendarme), 세관 직원도 상속세를 면제 받는다.

양도된 재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세가 감면되기도 하는데, 100%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상속인 간의 종신연금의 전환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 예술작품, 서적 및 컬렉션,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문서로 국가에 기증된 것

다음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산림 또는 농업 관련 재산
* 개인기업, 회사 지분 및 주식
* 1993년 6월 1일과 1994년 12월 31일 사이, 1995년 8월 1일과 1995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취득한 거주지
* 1995년 8월 1일과 199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거주용 및 차고용 건물

|  |
| --- |
| III. 프랑스 상속법상 상속순위 |

프랑스에서의 상속인 순위는 「민법」 제734조부터 제750조(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및 제756조부터 제767조(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규정한다.

<민법 제734조>

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친족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상속인이 된다.

1° 자녀 및 그 비속

2°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비속

3° 부모를 제외한 다른 존속

4° 형제자매 및 이들의 비속을제외한 방계혈족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뒤에 나열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례대로 상속순위를 구성한다.

|  |
| --- |
| En l'absence de conjoint successible, les parents sont appelés à succéder ainsi qu'il suit :  1° Les enfants et leurs descendants ;  2° Les père et mère ; les frères et soeurs et les descendants de ces derniers ;  3° Les ascendants autres que les père et mère ;  4° Les collatéraux autres que les frères et soeurs et les descendants de ces derniers.  Chacune de ces quatre catégories constitue un ordre d'héritiers qui exclut les suivants. |

1. **고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며 고인이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고인의 재산은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혼인한 경우)에게 분배된다.

고인이 생전에 유증(legs) 또는 증여(donation)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고인의 자녀는 생존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재산 전체를 상속받는다.

모든 자녀는 상속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재산은 자녀 간에 동일한 몫으로 분배된다. 예를 들어, 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 1인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고인 사이의 자녀 1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 자녀는 생존한 배우자의 몫을 제외한 고인의 재산 절반씩을 나누어 받는다.

<민법 제735조>

자녀를 포함하는 직계비속은 성별, 출생 순서와 관계 없이 다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모 또는 그 밖의 존속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  |
| --- |
| Les enfants ou leurs descendants succèdent à leurs père et mère ou autres ascendants, sans distinction de sexe, ni de primogéniture, même s'ils sont issus d'unions différentes. |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며, 대습상속에 의해서만(par représentation)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상속받는다.[[8]](#footnote-8)

|  |  |  |
| --- | --- | --- |
|  | **상속권자인 배우자의 권리** | **상속권자인 자녀의 권리** |
| **고인과 배우자 사이에만 자녀가 있는 경우** | ①유산 전체에 대한 용익권과 ②유산의 1/4에 대한 소유권 중 택1(직계비속의 권리는 배우자의 권리만큼 축소됨) | ①의 경우: 유산 전체에 대한 허유권 |
| ②의 경우: 유산의 3/4에 대한 소유권 |
| **배우자 외 다른 혼인관계로 인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유산의 1/4에 대한 소유권 | 유산의 3/4에 대한 소유권 |

<민법 제757조>

먼저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나 직계비속이 있으며, 모든 자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존재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용익권 또는 재산의 4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4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는다.

|  |
| --- |
| Si l'époux prédécédé laisse des enfants ou descendants, le conjoint survivant recueille, à son choix, l'usufruit de la totalité des biens existants ou la propriété du quart des biens lorsque tous les enfants sont issus des deux époux et la propriété du quart en présence d'un ou plusieurs enfants qui ne sont pas issus des deux époux. |

고인이 혼인하지 않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고인의 유산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된다. 고인이 시민연대협약을 맺거나 맺지 않은 동거인(partenaire ou concubine)과 생활한 경우, 동거인은 고인이 유언을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는다.

고인이 자녀를 단순입양(Adoption simple)[[9]](#footnote-9)한 경우, 입양아동(adopté)은 입양가족과 친가족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그러나 입양아동은 입양가족 내 무상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없는 증여 시와 동일한 세금(60%)를 납부해야 한다(배우자의 자녀이거나 고아인 경우 제외).

완전입양(Adoption plénière)된 아동의 경우, 친생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대신 입양가족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해 무상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민법 제757조>

먼저 사망한 배우자에게 자녀나 직계비속이 있으며, 모든 자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존재하는 재산 전체에 대한 용익권 또는 재산의 4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4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는다.

|  |
| --- |
| Si l'époux prédécédé laisse des enfants ou descendants, le conjoint survivant recueille, à son choix, l'usufruit de la totalité des biens existants ou la propriété du quart des biens lorsque tous les enfants sont issus des deux époux et la propriété du quart en présence d'un ou plusieurs enfants qui ne sont pas issus des deux époux. |

1. **고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고인에게 자녀가 없으며 유언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혼인 유무로 각기 다른 상속 규정이 적용된다.

**(1) 혼인을 한 경우**

고인이 혼인은 했으나 자녀가 없으며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유산을 상속한다.

|  |  |  |
| --- | --- | --- |
| **생존한 부모 수** | **부모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 |
| **2** | 유산의 1/2 | 유산의 1/2 |
| **1** | 유산의 1/4 | 유산의 3/4 |
| **0** | 0 | 모든 유산 |

**(2)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하지 않고 자녀도 없으며 유언을 남기지 않은 고인의 유산 상속은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혼인하지 않은 고인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고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본다.

고인에게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속을 받는다.

|  |  |  |
| --- | --- | --- |
| **생존한 부모 수** | **부모의 상속분** | **형제자매의 상속분** |
| **2** | 유산의 1/2 | 유산의 1/2 |
| **1** | 유산의 1/4 | 유산의 3/4 |
| **0** | 0 | 모든 유산 |

의붓형제나 의붓자매도 형제자매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고인에게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유산은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상속받는다. 먼저, 유산의 절반씩을 부계와 모계에 각각 나누고, 각 혈통의 첫 번째 세대 직계존속부터 가장 먼 세대까지 모두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혼인하지 않았으며, 생존해 있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의 유산은 방계혈족(고모, 이모, 삼촌, 사촌)에게 상속된다. 유산이 방계혈족에 귀속된 경우 유산은 부계와 모계의 방계혈족 간에 절반씩 나눈다.

|  |
| --- |
| IV. 상속 관련 주요 규정 |

1. **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생존해 있어야 한다. 즉, 고인의 사망 날짜 전에 태어났거나 태아가 잉태되어 있어야 하며 부적격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실종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민법(이하 ‘민법’으로 표기함) 제725조>

상속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에 실존하거나 이미 잉태된 태아가 존재해야 한다.

제112조에 따라 실종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
| --- |
| Pour succéder, il faut exister à l'instant de l'ouverture de la succession ou, ayant déjà été conçu, naître viable.  Peut succéder celui dont l'absence est présumée selon l'article 112. |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 받는다.

상속에서 배우자(époux)는 모든 경우 상속을 받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제3편제1장제3절 상속인 중 제2관 상속권자인 배우자의 권리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의 유무, 부부재산제, 유언이나 증여의 유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고인과 함께 생활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상속 받는다.

|  |  |
| --- | --- |
| **고인과 함께 생활한 사람의 상황** |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 |
| 배우자 | 있음 |
| 별거 중인 배우자 | 있음(별거 계약에 배우자의 상속권 포기 조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이혼한 배우자 | 없음(이혼을 한 경우, 과거 배우자는 서로에 대해 상속인 자격을 상실함) |
| 시민연대협약을 체결한 동거인(partenaire) | 없음(유언이나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 단순 동거인(concubine) | 없음(유언이나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1.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권리**

대습상속(représentation)은 「민법」 제751조-제755조에서 규정하며,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고인의 상속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우에 따라 생존한 상속인을 대신해서도 직계비속이 상속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1조>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권리를 상속받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의제(擬制)이다.

|  |
| --- |
| La représentation est une fiction juridique qui a pour effet d'appeler à la succession les représentants aux droits du représenté. |

<민법 제752-1조>

대습상속은 존속에 대해 일어나지 않으며, 두 가계 각각에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촌수가 먼 사람을 배제한다.

|  |
| --- |
| La représentation n'a pas lieu en faveur des ascendants ; le plus proche, dans chacune des deux lignes, exclut toujours le plus éloigné. |

<민법 제755조>

대습상속은 상속결격자가 상속 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라도 상속결격자의 자녀와 비속에 대해 인정된다.

제754조제2항에서 정한 규정은 상속결격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도 그의 자녀에게 적용된다.

|  |
| --- |
| La représentation est admise en faveur des enfants et descendants de l'indigne, encore que celui-ci soit vivant à l'ouverture de la succession.  Les dispos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54 sont applicables aux enfants de l'indigne de son vivant. |

고인의 자녀 및 그 자녀들의 직계비속, 고인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Q에게 A와 B, 2명의 자녀가 있다. B에게는 J와 K, 2명의 자녀가 있다. B가 Q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Q의 유산 상속 시, J와 K는 B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다. 즉, 유산의 절반은 A가, B의 몫인 나머지 절반은 J와 K가 나누어 갖는다. 여기서 Q는 피상속인, A는 상속인, B는 피대습인, J와 K는 대습상속인 이라고 한다.

대습상속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부적격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1. **부적격으로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제725조-제729-1조)**

고인에 대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상속인은 부적격(indignité)으로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유언을 통해 부적격자가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다(민법 728조).

다음의 경우 상속인은 자동으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 고인에 대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장본인이거나 공모하여 중범형을 선고 받은 자
* 폭력을 통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중범형을 선고 받은 자

지방법원은 다른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부적격을 선고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고인에 반하는 거짓된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상속 부적격자의 직계비속은 고인의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민법 제72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1° 고의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시도하여 주모자 또는 공모자로써 중범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고의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나 폭행을 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주모자 또는 공모자로써 중범형을 선고 받은 사람

|  |
| --- |
| Sont indignes de succéder et, comme tels, exclus de la succession :  1° Celui qui est condamné, comme auteur ou complice, à une peine criminelle pour avoir volontairement donné ou tenté de donner la mort au défunt ;  2° Celui qui est condamné, comme auteur ou complice, à une peine criminelle pour avoir volontairement porté des coups ou commis des violences ou voies de fait ayant entraîné la mort du défunt sans intention de la donner. |

<민법 제729-1조>

상속결격자의 자녀는 자신의 의지로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의 효력에 따라 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의 피상속인의 과실로 인해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상속결격자는 이 상속 재산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 Les enfants de l'indigne ne sont pas exclus par la faute de leur auteur, soit qu'ils viennent à la succession de leur chef, soit qu'ils y viennent par l'effet de la représentation ; mais l'indigne ne peut, en aucun cas, réclamer, sur les biens de cette succession, la jouissance que la loi accorde aux père et mère sur les biens de leurs enfants. |

1. **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거주권 관련 규정**

**(1) 혼인을 한 경우**

<민법 제732조>

상속권자인 배우자란 이혼하지 않은 생존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  |
| --- |
| Est conjoint successible le conjoint survivant non divorcé. |

해당 거주지가 다른 사람과 고인의 공유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는 고인 사망 후 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장소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권한을 가진다.

|  |  |  |  |
| --- | --- | --- | --- |
| **임차인인 경우** | **소유자인 경우** | | |
| **생존한 배우자 소유** | **고인 소유(단독)** | **고인 공동 소유** |
| - 고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존한 배우자는 해당 거주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 고인의 사망 이후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는 유산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생존한 배우자가 공증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고인과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었던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고인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양도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고인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자녀나 부모가 임대차 양도를 요구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거주지 분할을 결정함. |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평생 거주권을 가짐 | 고인이 거주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평생 거주권을 가짐 | 고인이 공동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고인 사망으로부터 1년 동안 거주할 권한을 가짐 |
| **\*** 재혼하는 경우에도 거주권이 유지됨 | | |

<민법 제763조 제1항 및 제2항>

사망 시점에 상속권자인 배우자가 주 거주지로 부부에게 속하거나 상속에 전적으로 종속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상속권자인 배우자는 해당 거주지 및 유산에 포함되며 해당 거주지를 채우고 있는 가구에 대해 1년 동안의 당연 무상 사용권을 가진다.

상속인인 배우자의 거주가 임대차에 따라 보장되거나 공유 부분이 고인에게 속한 주거로 보장되는 경우, 임대료나 점유 배상금은 1년 동안 지불이 이행됨에 따라 유산에서 환급된다.

|  |
| --- |
| Si, à l'époque du décès, le conjoint successible occupe effectivement, à titre d'habitation principale, un logement appartenant aux époux ou dépendant totalement de la succession, il a de plein droit, pendant une année, la jouissance gratuite de ce logement, ainsi que du mobilier, compris dans la succession, qui le garnit.  Si son habitation était assurée au moyen d'un bail à loyer ou d'un logement appartenant pour partie indivise au défunt, les loyers ou l'indemnité d'occupation lui en seront remboursés par la succession pendant l'année, au fur et à mesure de leur acquittement. |

**(2) 시민연대협약을 체결(pacser)한 동거인의 경우**

혼인 대신 시민연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권이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  |  |  |  |
| --- | --- | --- | --- | --- |
| **임차인인 경우** | | **소유자인 경우** | | |
|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 **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 **두 사람이 공동 소유** | **고인이 단독 소유** | |
| 생존한 동거인이 임대차에 대해 단독으로 권리를 가짐 | 생존한 동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양도받음(고인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자녀나 부모가 임대차 양도를 요구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거주지 분할을 결정함). | 고인이 해당 동거인의 거주권 박탈을 유언장에 남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한 동거인은 고인 사망 후 1년 동안 거주권을 가짐.  생존한 동거인은 고인이 유언에서 정한 경우 또는 공증인에게 재산분할 시 요청하여 청산금을 지불하는 경우 거주지에 대한 우선권을 가짐. | | 고인이 유언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인 사망 후 1년 동안 거주권을 가짐. |

<1986년 12월 23일 법률 제86-1290호를 개정하는   
임대차 관계 개선을 위한 1989년 7월 6일 법률 제89-462호 제14조제2항>[[10]](#footnote-10)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양도된다.

* 「민법」 제1751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생존한 배우자
* 고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
* 시민연대협약 체결로 임차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거인
* 고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존속, 공인된 단순 동거인 또는 피부양자

여러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직면한 이익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 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사망 또는 포기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  |
| --- |
| Lors du décès du locataire, le contrat de location est transféré :  -au conjoint survivant qui ne peut se prévaloir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751 du code civil ;  -aux descendants qui vivaient avec lui depuis au moins un an à la date du décès ;  -au partenaire lié au locatair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aux ascendants, au concubin notoire ou aux personnes à charge, qui vivaient avec lui depuis au moins un an à la date du décès.  En cas de demandes multiples, le juge se prononce en fonction des intérêts en présence.  A défaut de personnes remplissant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le contrat de location est résilié de plein droit par le décès du locataire ou par l'abandon du domicile par ce dernier. |

**(3) 단순 동거(concubinage) 중인 동거인의 경우**

|  |  |  |  |  |
| --- | --- | --- | --- | --- |
| **임차인인 경우** | | **소유자인 경우** | | |
|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 **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 **두 사람이 공동 소유** | **고인이 단독 소유** | |
| 생존한 동거인이 임대차에 대해 단독으로 권리를 가짐 | 1년 이상 같이 거주하였거나 동거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생존한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양도받음(1년 미만인 배우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생존한 동거인은 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권이 없음(고인 사망 시 고인 귀속분이 고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됨 | | 생존한 동거인은 거주지에 머무를 권한이 없으며, 고인의 상속인이 거주지를 떠날 것을 요청할 수 있음(고인이 유언을 통해 거주지의 용익권을 유증하는 경우에만 거주권을 가짐) |

**(4) 생존한 배우자 용익권의 연금이나 자본으로의 전환[[11]](#footnote-11)**

생존한 배우자로서 유산의 용익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는 일정 조건하에 이를 종신연금이나 자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환은 재산의 최종 분할 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허유권을 가진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한 경우, 이들과 전환 방식을 결정하며 전환할 용익권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도움을 받는다.

허유권자인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고인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연금으로의 전화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공증인을 통해 유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자본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민법 제766조>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상속인들은 약정에 따라 거주권과 사용권을 종신연금이나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 --- |
| Le conjoint successible et les héritiers peuvent, par convention, convertir les droits d'habitation et d'usage en une rente viagère ou en capital. |

**(5) 상속인에 대한 생존한 배우자의 부양료(pension alimentaire) 청구[[12]](#footnote-12)**

상속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생존한 배우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인 사망 시 고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곤궁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단, 고인 사망 이후 곤궁한 처지가 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부양료 청구는 고인 사망으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인들이 부양료 지급을 중단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지방법원에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로 결정할지를 결정하도록 제소할 수 있다.

<민법 제767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은 곤궁한 상태에 처한 상속권자인 배우자에게는 정기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배우자의 사망 시점 또는 상속인들이 이전에 배우자에게 제공해왔던 부담금의 지급을 중단한 시점부터 1년이다. 이 기한은 공유재산의 경우 분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장된다.

부양료는 유산에서 공제된다. 부양료는 모든 상속인이 부담하고, 부족한 경우 모든 특정 수증자가 자신의 상속 취득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고인이 해당 유증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이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 제927조를 적용한다.

|  |
| --- |
| La succession de l'époux prédécédé doit une pension au conjoint successible qui est dans le besoin. Le délai pour la réclamer est d'un an à partir du décès ou du moment où les héritiers cessent d'acquitter les prestations qu'ils fournissaient auparavant au conjoint. Le délai se prolonge, en cas d'indivision, jusqu'à l'achèvement du partage.  La pension alimentaire est prélevée sur la succession. Elle est supportée par tous les héritiers et, en cas d'insuffisance, par tous les légataires particuliers, proportionnellement à leur émolument.  Toutefois, si le défunt a expressément déclaré que tel legs sera acquitté de préférence aux autres, il sera fait application de l'article 927. |

**(6)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복귀권[[13]](#footnote-13)**

복귀권(droit de retour)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녀 사망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모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다.

증여된 재산의 형태 그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자산의 범위 내에서 증여된 재산가액만큼을 반환 받는다.

<민법 제738-2조>

부와 모 또는 둘 중 1인보다 고인이 먼저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후손이 없는 경우, 부모는 모든 경우 증여에 따라 고인이 자신들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738조제1항에서 정하는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의 복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복귀권의 행사 범위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모의 상속분에 우선적으로 계상한다.

복귀권이 현물로 행사될 수 없는 경우,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적 가치로 복귀권이 행사된다.

|  |
| --- |
| Lorsque les père et mère ou l'un d'eux survivent au défunt et que celui-ci n'a pas de postérité, ils peuvent dans tous les cas exercer un droit de retour, à concurrence des quote-parts fixé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38, sur les biens que le défunt avait reçus d'eux par donation.  La valeur de la portion des biens soumise au droit de retour s'impute en priorité sur les droits successoraux des père et mère.  Lorsque le droit de retour ne peut s'exercer en nature, il s'exécute en valeur, dans la limite de l'actif successoral. |

□ **출처 및 참고자료** □

* 남효순, “프랑스상속법에서의 혈족상속 –계통상속 및 대습상속–“, 법학, Vol. 38 No3-4, 1997, 150-184
* 김미경, “프랑스상속법에서의 배우자 상속권 –2001년 12월 3일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4집 제1호, 2010, 63-82
*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민법」 원문본, 번역본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4&searchNtnl=FR&CTS_SEQ=38144&AST_SEQ=1286&ETC=5>)
*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73>)

1. 네이버 국어사전 ‘상속’ 참고. [↑](#footnote-ref-1)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이란’ 참고(<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footnote-ref-2)
3. 프랑스 법령포털상의 원문본 링크(<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82185&categorieLien=id>). [↑](#footnote-ref-3)
4. 김미경, “프랑스상속법에서의 배우자 상속권 –2001년 12월 3일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4집 제1호, 2010, 63-82. [↑](#footnote-ref-4)
5.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73>) [↑](#footnote-ref-5)
6.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참조(<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0>). [↑](#footnote-ref-6)
7. ‘행정서식등록검토원(centre d'enregistrement et de révision des formulaires administratifs)’의 줄임말로, 이 곳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서식을 통칭함. 서식 번호는 5자리 숫자+2자리의 버전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footnote-ref-7)
8.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1인의 상속분이 각각 1.5:1로 자식 1명당 1씩 균등하게 주어지므로, 자녀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녀의 상속분의 합계가 크게 증가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속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한국경제 2014년 2월 6일 기사 “배우자 상속분 확대 논란… 법무부 '민법 개정위' 재소집” 중 인용,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20637561>). [↑](#footnote-ref-8)
9. 단순입양인지 완전입양인지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관계, 친권, 입양자녀의 성, 친가족의 유산 상속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짐. 단순입양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지만 완전입양은 철회 불가능. [↑](#footnote-ref-9)
10. 프랑스 법령포털상의 원문본 링크(<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09310&dateTexte=20181227>). [↑](#footnote-ref-10)
11. 프랑스 공공행정서비스 홈페이지 2018년 6월 6일 기준. [↑](#footnote-ref-11)
12. 2017년 7월 19일 기준 [↑](#footnote-ref-12)
13. 2017년 6월 27일 기준 [↑](#footnote-ref-13)